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 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566-8000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서면접수 : CS추진파트 및 지점 방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02 - 316 - 7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02 - 3702 - 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금융센터 한화손 해보험 CI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청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www.hwggeneralins.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CS추진파트 및 지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청구 및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의무

당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고객은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

한화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3
주요내용 요약서	11
공제금액안내표	13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5
주요 민원사례 안내	17
주요 보험용어 해설	19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 ₁₈₀₄	
1종(적립형) 보통약관	21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 ₁₈₀₄	
2종(거치형) 보통약관	35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 ₁₈₀₄	
3종(즉시형) 보통약관	47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 ₁₈₀₄	
제도성특별약관	59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60
2. 전자서명 특별약관	60
【부칙】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63
【별표】 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65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66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I.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연금저축손해보험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보통약관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 1.~6.)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 하는 경우도 포함
- 만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text{연금재원평가총액}} \times 1.2 \\ (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보며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 연금지급기간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

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비용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 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자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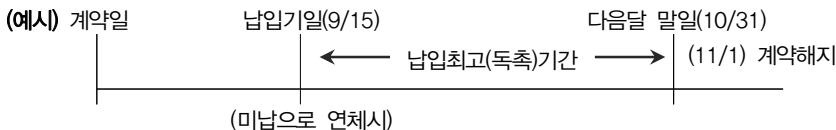
-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금합니다.

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2)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 4) 3)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되며,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1)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5.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시점 기준 직전 1회 기본 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 3) 2)에 따라 부활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계약자 및 보험수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공제금액안내표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1종(적립형), 40세, 연금개시 60세, 20년납, 월납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 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주1)}	매월	판매보수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 (0원)
			유지보수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 (0원)
	계약관리비용 ^{주2)}	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0%(6,000원)
		매년	납입기간이후 : 0원 ^{주3)}
보증비용	만기보험금 보증	매월	해당없음
연금수령 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주1) 계약체결비용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되는 금액

(납입기간과 10년중 적은 기간 동안 부가)

주2) 계약관리비용 :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되는 금액

주3) 1종(적립형)과 2종(거치형)에서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까지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에
한하여 매월 3,000원의 계약관리비용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적립보험료	계약유지 · 관리비용	납입시	추가적립보험료의 1.5%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 1종(적립형), 40세, 연금개시 60세, 20년납, 월납 20만원)

10년이내	10년초과
6,000원	6,000원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단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참조



[2단계]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세요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조항 참조



[3단계] 보험계약 체결(회사의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 참조



[4단계] 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약관 “**연금의 지급**” 조항 참조

주요 민원사례 안내

▣ 상품설명 및 자필서명 관련

- 사례 :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기재내용 확인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으로 '예'라고 답변하였다며,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 납입보험료 반환요구하며 민원제기

☞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 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청약사항과 실제계약사항 상이

- 사례 :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민원제기 |

☞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세금

- 사례 : 10년 전 FP가 비과세상품이라고 소개하여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 후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연금소득세가 공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과세로 안내 받아 가입한 상품이므로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 제기 |

☞ 연금저축보험계약의 세제관련 사항은 해당 계약의 사업방법서의 「기타」 조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해당 약관의 「계약의 세제혜택 등」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소득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 과소

- 사례 : 10년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계약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연금수령 안내를 받았으나, 가입시 안내받은 연금 수령액보다 현저히 작아 민원 제기 |

☞ 금리연동형인 연금상품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달라지므로 가입 당시 예측한 이율과 연금 지급시점의 이율차이에 의해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용어 해설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어가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의되는 경우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서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질병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금액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봄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₁₈₀₄
1종(적립형)
보통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부록】 참조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2019년) 8월 14일까지 1년.
-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기간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적립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부가보험료: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적용 및 공시)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로 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제1항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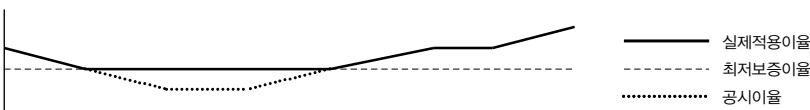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 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 이율공시설”에서 공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부리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제3조(연금의 지급)

-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연금액은 회사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해당 시점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의 변동이나 보험료의 납입일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4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 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자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부록】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서명의 종류]

1. 시인(signature)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 감액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수령액]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수령액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수령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 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여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기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기압류 등 법적으로 자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제13조(계약의 소멸)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2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보며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 연금지급기간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	----------	----------	----------	----------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기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기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기입일로 합니다.

〈 의료비 인출 〉

계약자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비용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천재지변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계약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기입일 및 연금수령 한도 신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영합니다.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이란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2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부록】 참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기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계약상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시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납입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헤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2.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제19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시점 기준 직전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 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원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부록】 참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기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주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료 납입이 지난 기간에 따라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율IV를 적용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5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0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시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₁₈₀₄
2종(거치형)
보통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부록】 참조)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2019년) 8월 14일까지 1년.
-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 일시납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일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적용 및 공시)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로 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제1항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기준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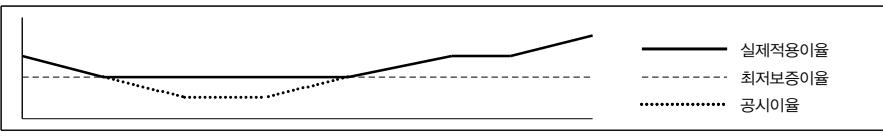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 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 이율공시설”에서 공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부리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제3조(연금의 지급)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설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액은 회사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해당 시점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변동이나 보험료의 납입일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제4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 제1항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하 “기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자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부록】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 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 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자체 없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서명의 종류]

- 사인(signature)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립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입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연금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 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기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기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2018년 4월 13일
 $\Rightarrow 2018\text{년 } 4\text{월 } 13\text{일} - 1989\text{년 } 10\text{월 } 2\text{일} = 28\text{년 } 6\text{월 } 11\text{일} = 29\text{세}$

제13조(계약의 소멸)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20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기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을 기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보며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 연금지급기간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기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	----------	----------	----------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의료비 인출 〉

계약자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비용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 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계약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 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 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5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이란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 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계약이전금액을 말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기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이전 받은 날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시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정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2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₁₈₀₄
3종(즉시형)
보통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를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부록】 참조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2019년) 8월 14일까지 1년.
-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 일시납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일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적용 및 공시)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로 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제1항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기준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	연복리 1.0%	연복리 0.5%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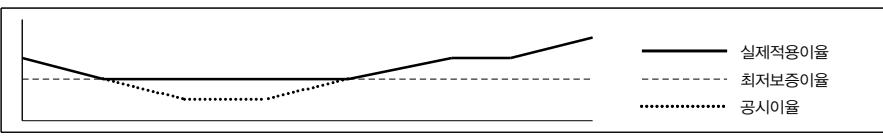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품 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 이율공시설”에서 공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8%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8%)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제3조(연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액은 회사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2조(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해당 시점의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밀하며,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변동이나 보험료의 납입일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4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자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의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수의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의자는 계약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주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부록】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종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2. 기타 계약의 내용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 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등 제3항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기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기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기압류 등 법적으로 자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제 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2017년 4월 13일
 $\Rightarrow 2017\text{년 } 4\text{월 } 13\text{일} - 1988\text{년 } 10\text{월 } 2\text{일} = 28\text{년 } 6\text{월 } 11\text{일} = 29\text{세}$

제13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quad = \quad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자}^{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을 기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보며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저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연금지급기간〉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기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기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기입일로 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이후	가입즉시	(가입후)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최소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하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 의료비 인출 〉

계약자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비용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계약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

- 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 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금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 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4조(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이란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 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계약이전금액을 말합니다.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주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는 계약이전 받은 날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IV를 적용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9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2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이전용연금보험₁₈₀₄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7조(보험계약의 성립)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 【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
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이 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 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연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보험만기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만기일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1년 이내 : 공시이율 × 50%
			1년 초과기간 : 추가 1%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 × 50%
		1년 초과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연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기간은 유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Ⅳ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4. 상기 공시이율은 유배당 연금저축 공시이율Ⅳ로 적용합니다.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조항은 약관작성일(2018.03.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일 이후 해당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령별 목차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법

전자서명법

보험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종양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증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 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기증평균하여 산출한다.
 -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기증평균하여 산출한다.
-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구 분	평균공시이율
2018년	2.50%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